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규제자유특구 및
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
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오영주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개정(“24. 2.6 공포)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확대, 실증특례 부여 대상에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참여하는 자 추가,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시 재심의 절차 등이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령을 개정 및 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확대에 따른 체계 및 조문 정비(안 제2조, 제3조 등)
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)에서 비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(비수도권 시·도지사 등)까지 확대함에 따라 용어 정비
- 나. 실증사업자 확대 및 부담금·세제·재정지원 요건 명시(안 제57조의2 신설)
특구 외 기업(예. 수도권)이 특구 내에서 실증특례 이용을 허용, 기업이전 완료시 부담금·세제·재정지원 가능
- 다. 실증특례·임시허가 부결 시 재심의 신청 절차 마련(안 제57조의3 등 신설)
- 라. 규제부처 법령 정비계획 필요사항 명시로 임시허가 실효성 제고
(안 제59조제8항, 제9항 등)

임시허가 관련 법령 정비 시 규제부처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
필요한 법령정비계획 내용 및 정비완료 시 고지의무 신설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5. 21. ~ 7. 1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외하며, 이하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”라 한다)”를 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(이하 “수도권”이라 한다)을 제외한 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”라 한다)
2.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3. 「지방자치법」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(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)

제3조제1항 중 “이하 같다”를 “이하 2장에서 같다”로 하고, “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를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제7호”를 “제8호”로 한다.

제40조제1항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시·도지사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. 이하 “비수도권 시·도”라 한다)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비수도권 시·도등”이라 한다)”로 하며, “시·도지사가”를 “시·도지사등이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·특별자치시 및 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비수도권 시·도”라 한다)
2. 수도권을 제외한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)·군·구
3. 「지방자치법」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(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에 포함될 경우는 제외한다)

제41조제1항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시·도지사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시·도지사등”으로 한다.

제42조제1항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시·도지사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·도지사가”를 “시·도지사등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“시·도의”를 “시·도등의”로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시·도지사가”를 “시·

도지사등이”로 한다.

제43조제1항 중 “시·도지사는”은 “시·도지사등은”으로, “시·도의”를 “시·도등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·도지사에게”를 “시·도지사등에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·도지사는”을 “시·도지사등은”으로, “시·도의”를 “시·도등의”로 한다.

제45조제2호 중 “시·도”를 “시·도 또는 시·군·구”로 한다.

제46조제1항제2호 중 “시·도지사가”를 “시·도지사등이”로 한다.

제48조제2항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시·도지사등”으로 한다.

제49조제8항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시·도지사등”으로 한다.

제51조의 제목 중 “규제자유특구기획단”을 “특구혁신기획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규제자유특구기획단”을 “특구혁신기획단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규제자유특구기획단”을 “특구혁신기획단”으로 한다.

제53조제2항 중 “시·도지사가”를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이”로, “시·도지사”를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·도지사는”을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”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시·도지사는”을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은”으로 한다.

제55조제1항 중 “시·도지사는”을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·도지사는”을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은”으로 한다.

제56조제1항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·도지사는”을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은”으로 하며, 같은

조 제3항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으로”로, “시·도지사”를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시·도지사”는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”으로, 같은 조 제5항 중 “시·도지사”는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은”으로 한다.

제57조제1항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의 제5호 중 “시·도지사가”를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“제6항”을 “제9항”으로, “시·도지사를”을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 중 “제6항”을 “제9항”으로 한다.

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7조의2(실증특례 부여 신청 등) ① 법 제86조제1항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(수도권을 포함한다)에 소재하여 실증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등을 말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를 신설 또는 이전하고 신설(이전)登記 또는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.

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7조의3(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) ① 법 제86조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에 제5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법 제86조제6항에 따라 심의·의결 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의 재심의 심사 등은 제57조 제3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·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 재심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58조제1항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”으로 한다.

제59조제1항 중 “시·도지사는”을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은”으로 한다.

제59조제3항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과”로, “시·도지사는”을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은”으로 한다.

제59조제5항 중 “시·도지사는”을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은”으로 한다.

제59조제7항 중 “시·도지사가”를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이”로, “시·도지사”를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”으로 한다.

제59조제8항 중 “시·도지사는”을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은”으로, “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,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·도지사를 거쳐 실증사업자에게 법령 정비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.”를 “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중소

벤처기업부장관은 법령 정비 계획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
2. 법령정비 대상 법령, 정비 내용 및 정비 일정
3. 법령정비가 곤란하거나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
4. 향후 정비 계획
5. 그 밖에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고지할 사항

제59조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제8항에 따라 법령 정비가 완료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을 거쳐 실증사업자에게 법령 정비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9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(중전의 제9항)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”으로, “제10항”을 “제11항”으로, 같은 항 제4호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”으로 한다.

제59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1항(중전의 제10항)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”으로 한다.

제59조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2항(중전의 제11항) 중 “시·도지사는”을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은”으로, “제9항”을 “제10항”으

로, “제10항”을 “제11항”으로 한다.

제60조제1항 중 “제12항”을 “제14항”으로, “시·도지사”를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6항”을 “제9항”으로, “제8항”을 “제10항”으로, “시·도지사”를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2항”을 “제1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12항”을 “제14항”으로 한다.

제61조제1항 중 “제12항”을 “제14항”으로 하고, “시·도지사”를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과”로 한다.

제62조제1항 중 “제12항”을 “제1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1항”을 “제13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”으로 한다.

제64조제1항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시·도지사가”를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 중 “제8항”을 “제10항”으로, “시·도지사를”을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 중 “제8항”을 “제10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1항 중 “제9항”을 “제11항”으로 한다.

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4조의2(임시허가 재심의 신청 등) ① 법 제90조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재심의를 신청서에 제6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법 제90조제7항에 따라 심의·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재심의 심사 등은 제64조 제3항부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·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 재심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65의제1항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”로 한다.

제68조제1항 중 “시·도지사는”을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·도”를 “비수도권 시·도등”으로 한다.

제73조 중 “시·도는”을 “비수도권 시·도등은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법 제90조제14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거나, 인적·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	법 제143조제1항제4호	
---	---------------	--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① (생 략)</p> <p>② 법 제2조제1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”란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외하며, 이하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등의 의견이 서로 달라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2조(정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, <u>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”이라 한다)</u>-</p> 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. 1. <u>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(이하 “수도권”이라 한다)을 제외한 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비수도권 시·도지사”라 한다)</u></p> <p>2. <u>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 <p>제3조(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등) ①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「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 <u>이하 같다</u>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(이하 “특화특구”라 한다)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15조(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법 제16조제2항 <u>제7호</u>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</p>	<p>3. 「지방자치법」 제199조에 따른 <u>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(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권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)</u></p> <p>제3조(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하 2장에서 같다</u>----- <u>구청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제8호</u>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③~⑥ (생략)</p> <p>제40조(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)</p> <p>① 비수도권 <u>시·도지사</u>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② <u>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</u>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. 이하 “비수도권 시·도”라 한다)가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비수도권 <u>시·도지사</u>가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~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0조(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)</p> <p>① 비수도권 <u>시·도지사등</u>은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</u>(이하 “비수도권 시·도등”이라 한다)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<u>광역시·특별자치시 및 도·특별자치도</u> (이하 “비수도권 시·도”라 한다)</p> <p>2. 수도권을 제외한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</p>

현행	개정안
<p>① 비수도권 <u>시·도지사</u>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67조에 따른 시·도 지방시대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</p> <p>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은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비수도권 <u>시·도지사</u>가 정하되 “규제자유특구”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“특화특구”, 「관광진흥법」 제70조에 따른 “관광특구”,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“연구개발특구” 등과 구분되도록 정해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 1.~5. (생략) 6. 비수도권 <u>시·도</u>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7.~10. (생략)</p> <p>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<u>시·도지사</u>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	<p>① ----- <u>시·도지사등</u>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u>시·도지사등</u>이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 1.~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<u>시·도</u>등의----- -----</p> <p>7.~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시·도지사등</u>이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3조(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)</p> <p>① 비수도권 <u>시·도지사</u>는 법 제74</p>	<p>제43조(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)</p> <p>① -----<u>시·도지사등</u>은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조제2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공고할 경우 해당 비수도권 <u>시·도의</u>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30일 이상 공고하고,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주민·기업 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2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, 기업 등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해당 비수도권 <u>시·도지사</u>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견을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</p> <p>③ 비수도권 <u>시·도지사</u>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비수도권 <u>시·도의</u>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제45조(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·의결 시 고려사항)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	<p>----- -----<u>시·도</u>등의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<u>시·도</u>지사등에게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<u>시·도</u>지사등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시·도</u>등의----- ----- -----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5조(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·의결 시 고려사항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2. 지역의 특성·여건 및 <u>시·도</u> 발전전략과의 적합성</p> <p>3.~11. (생략)</p> <p>제46조(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 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) 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수도권 <u>시·도지사</u>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것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48조(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 청취) ① (생략)</p> <p>②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수도권 <u>시·도지사</u>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 <p>제49조(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~⑦ (생략)</p> <p>⑧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, 비수도권 <u>시·도지사</u>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</p>	<p>2. -----<u>시·도</u> 또는 <u>시·군·구</u>-----</p> <p>3.~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6조(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 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<u>시·도지사등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8조(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 청취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시</u> -----<u>·도지사등</u>----- ----- -----</p> <p>제49조(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~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----- ----- ----- -----<u>시·도지사등</u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.</p>
<p>⑨·⑩ (생략)</p>	<p>⑨·⑩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1조(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운영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 79조제2항에 따른 <u>규제자유특구기 획단</u>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·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</p>	<p>제51조(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) ① ----- -----<u>특구혁신기획 단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<u>규 제자유특구기 획단</u>의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.</p>	<p>② ----- -<u>특구혁신기획단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3조(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)</p>	<p>제53조(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)</p>
<p>① (생략)</p>	<p>①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 특구가 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 특구 관할 <u>시·도지사</u>가 규제자유 특구 지정해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 우에는 관할 <u>시·도지사</u>에게 규제 자유특구 지정해제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.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</u>----- ----- -----<u>비수도권 시·도 지사등</u>----- -----.</p>
<p>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해제 신청을 요청받은 <u>시·도지사</u></p>	<p>③ ----- -----<u>비수도권 시</u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.</p>	<p>· <u>도지사등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가 지정해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, 이를 해당 규제자유특구 관할 <u>시·도지사</u>에게 통보해야 한다.</p>	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비수도권</u> <u>시·도지사등</u>----- -----.</p>
<p>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<u>시·도지사</u>는 해당 민간기업등과 이해관계자에게 즉시 통보하고, 그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, 기업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</p>	<p>⑤ ----- -----<u>비수도권 시·도지사</u> <u>등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⑥ (생략) 제55조(사후관리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<u>시·도지사</u>는 법 제84조에 따라 법 제3장제2절의 특례의 적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.</p>	<p>⑥ (현행과 같음) 제55조(사후관리 등) ① ----- -----<u>비수도권 시·도지사</u> <u>등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규제자유특구 관할 <u>시·도지사</u>는 점검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</p>	<p>② ----- -----<u>비수도권 시·도지사</u> <u>등</u>----- -----.</p>
<p>③ (생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56조(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)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(이하 “규제확인”이라 한다)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제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시·도지사는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권한의 범위에서 규제확인을 한 경우에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,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.</p> <p>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규제확인 신청을 받은 사항 중 중소기업부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시·도지사로부터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을 하여 시·도</p>	<p>제56조(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----- -----사등-----. ----- -----. 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----- ----- -----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으로----- -----비수도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,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.</p>	<p>권 시·도지사등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④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85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의견 및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를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·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.</p>	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----- -----</p>
<p>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·도지사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.</p>	<p>⑤ ----- -----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은----- ----- -----</p>
<p>제57조(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) ①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(이하 “실증특례”라 한다)를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	<p>제57조(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----- -----</p>
<p>1.~4. (생략) 5. 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</p>	<p>1.~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-----비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시·도지사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</u></p> <p>②~⑦ (생략)</p> <p>⑧ 법 제86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<u>시·도지사</u>를 거쳐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.</p> <p>1.~6. (생략)</p> <p>⑨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86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법 제87조제10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해당 실증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.</p> <p>⑩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수도권 시·도지사등</u>----- -----</p> <p>②~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-----제9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을----- -----.</p> <p>1.~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⑨ ----- -제9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.</p> <p>⑩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57조의2(실증특례 부여 신청 등)</u></p> <p>① <u>법 제86조제1항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(수도권을 포함한다)에 소재하여 실증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등을 말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	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를 신설 또는 이전하고 신설(이전) 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.</p> <p>제57조의3(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)</p> <p>① 법 제86조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에 제57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법 제86조제6항에 따라 심의·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의 재심의 심사 등은 제57조 제3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④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·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.</p> <p>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 재심의를 필요</p>

현행	개정안
<p>· <u>도지사는</u>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<u>시·도지사는</u> 법 제87조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의 필요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⑥ (생략)</p> <p>⑦ 중소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<u>시·도지사</u>가 법 제87조제6항 또는 이 조 제6항에 따라 검토하거나 처리한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그 내용을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검토 결과서로 작성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<u>시·도지사</u>를 거쳐 실증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</p> <p>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<u>시·도지사</u>는 법 제87조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, 중소</p>	<p><u>권 시·도지사</u>등은----- 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<u>비수도권 시·도지사</u> <u>사</u>등은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----- ----- -----<u>비수도권 시·도지사</u> <u>등이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비수</u> <u>도권 시·도지사</u>등을----- -----.</p> <p>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<u>비수도권 시·도지사</u>등은 법 제87조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</p>

현행	개정안
<p><u>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·도지사를 거쳐 실증사업자에게 법령 정비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.</u></p>	<p><u>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령 정비 계획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1.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2. 법령정비 대상 법령, 정비 내용 및 정비 일정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3. 법령정비가 곤란하거나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4. 향후 정비 계획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5. 그 밖에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고지할 사항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⑨ 제8항에 따라 법령 정비가 완료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을 거쳐 실증사업자에게 법령 정비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⑩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9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령 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⑩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9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령 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⑩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9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령 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⑩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9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령 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⑩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9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령 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⑩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9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령 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⑩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9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령 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⑩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9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령 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⑩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9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령 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⑩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9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령 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⑩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9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령 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⑩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9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령 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⑩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9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령 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<u>시·도지사</u>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<u>제10항</u>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 4. 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<u>시·도지사</u>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</p> <p>⑩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<u>시·도지사</u>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<u>시·도지사</u>는 <u>제9항</u> 또는 <u>제10항</u>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 등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</p>	<p>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<u>비수도권 시·도지사</u>등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<u>제11항</u>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---- ----- <u>비수도권 시·도지사</u>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</p> <p>⑩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<u>비수도권 시·도지사</u>등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<u>비수도권 시·도지사</u>등은 <u>제10항</u> 또는 <u>제11항</u>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 등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2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등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(이하 “보험금등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다만, 지급 보험금등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.</p>	<p>③ ----- -----제 14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~4. (생략)</p>	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④ (생략)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88조제2항 본문 및 제90조제12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⑤ ----- ----- -----제14 항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⑥ (생략)</p>	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1조(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) ①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2항 단서 및 제90조제1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기 전까지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·도지사와 별도 협의를 통해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</p>	<p>제61조(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14항----- ----- ----- -----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과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을 마련해야 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62조(손해배상 절차 등) ① 법 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2항의 책임보험등 또는 배상 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④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88조제1항 단서 및 제90조제11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.</p> <p>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는 중소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고, 손해배상을 한 날(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 통지를 한 날을 말한다)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.</p> <p>⑥ (생략)</p>	<p>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2조(손해배상 절차 등) ① ----- -----<u>제14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<u>제13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----- ----- -----<u>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64조(임시허가의 신청 등) ①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<u>시·도지사</u>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으로 제59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실증사업자가 법 제87조제8항 및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호에 따른 안전성 검증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<u>시·도지사가</u>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</p> <p>②~⑧ (생략)</p> <p>⑨ 법 제90조제8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<u>시·도지사</u>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</p>	<p>제64조(임시허가의 신청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비수도권 시·도지사</u>등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----- ----- <u>비수도권 시·도지사</u>등이-- -----</p> <p>②~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⑨ -----<u>제10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비수도권 시·도지사</u>등을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한다.</p> <p>1.~6. (생략)</p> <p>⑩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90조 제8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.</p> <p>⑪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0조제9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하거나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, 중소기업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.</p> <p>⑫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-----.</p> <p>1.~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⑩ ----- --<u>제10항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⑪ ----- ----<u>제11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⑫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64조의2(임시허가 재심의 신청 등)</u></p> <p>① <u>법 제90조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서에 제6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법 제90조제7항에 따라 심의·의결 결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5조(임시허가의 변경) 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허가의 내용·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변경신청서를 규제자유특구 관할 <u>시·도지사</u>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68조(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)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<u>시·도지사</u>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, 규제자유특구의 운영, 규제확인, 실증특례,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,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을 구성·운영할</p>	<p><u>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제1항의 재심의 심사 등은 제64조 제3항부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 <p>④ <u>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·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.</u></p> <p>⑤ <u>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 재심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</p> <p>제65조(임시허가의 변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비수도권 시·도지사</u>등을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8조(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) ① -----<u>비수도권 시·도지사</u>등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<u>시·도의</u> 조례로 정한다.</p> <p>제73조(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관한 특례) 법 제116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관할 <u>시·도</u>는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의 지정·정지·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[별표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과태료의 부과기준(제88조 관련)</p> <p>1. 일반기준 (생략)</p> <p>2. 개별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위반행위</th> <th rowspan="2">근거 법조문</th> <th colspan="3">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</th> </tr> <tr> <th>1차 위반</th> <th>2차 위반</th> <th>3차 이상 위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생략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라. 법 제90조제1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거나, 인적·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</td> <td>법 제143조 제1항제4호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(생략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	(생략)					라. 법 제90조제1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거나, 인적·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	법 제143조 제1항제4호				(생략)					<p>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u>비수</u> <u>도권 시·도등</u>의-----.</p> <p>제73조(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관한 특례) ----- -----<u>비수도권 시·도등</u> <u>은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[별표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과태료의 부과기준(제88조 관련)</p> <p>1. 일반기준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개별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위반행위</th> <th rowspan="2">근거 법조문</th> <th colspan="3">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</th> </tr> <tr> <th>1차 위반</th> <th>2차 위반</th> <th>3차 이상 위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라. 법 제90조제14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거나, 인적·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</td> <td>법 제143조 제1항제4호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	(현행과 같음)					라. 법 제90조제14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거나, 인적·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	법 제143조 제1항제4호				(현행과 같음)				
위반행위		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차 위반	2차 위반		3차 이상 위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라. 법 제90조제1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거나, 인적·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	법 제143조 제1항제4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라. 법 제90조제14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거나, 인적·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	법 제143조 제1항제4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4 - 7204